

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(안)

현 행	서울시(표준안)	우리구(안)
<p>제15조(직무) 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, 민원서류 발급, 통·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.</p> <p>②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,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를 한다.</p>	<p>제15조(직무) ① 현행과 같음</p> <p>(신설)②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에 대한 상담, 현장방문, 사후관리를 한다</p>	<p>제15조(직무) (개정)① 동장은 ...이후 현행과 같음 (개정) ② 동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, 현장방문, 사후관리를 한다</p> <p>[신설] ③ 동장은 마을공동체 복원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

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(안)

현 행	서울시(표준안)	우리구(안)
<p><u>제45조(동)</u>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11.</p> <p>12. 주민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13. 주민자치회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</p> <p>14.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15. 그밖에 주민자치와 관련한 사항</p> <p>16.~32.</p> <p>33. 보건복지플래너 운영에 관한 사항 (신설 2014. 12. 26)</p>	<p>제45조(동의 사무)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</p> <p>1.~11.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주민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삭제)</p> <p>13. 주민자치회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(삭제)</p> <p>14.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삭제)</p> <p>15. 그밖에 주민자치와 관련한 사항</p> <p>16~32.(현행과 같음)</p> <p>33.보건복지플래너 운영에 관한 사항 (신설)34.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, 현장방문, 사후관리</p>	<p>제45조(동장의 사무)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</p> <p>1.~11.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(삭제)</p> <p>13. (삭제)</p> <p>14. (삭제)</p> <p>(개정) 15.마을계획단 운영, 마을총회 등 주민자치와 관련한 사항</p> <p>16~33.(현행과 같음)</p> <p>(신설) 34.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, 현장방문, 사후관리</p>